

의안번호	2220851
의 퇴 인	박정현의원
회 답 일	2026.10.7.
추 계 번호	26D4317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억 2,000만원(연평균 1억 8,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실태조사 (안 제14조의2 신설)	-	460	-	460	-	920	18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4조의2(실태조사)	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며,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14조의2(실태조사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2년마다 수행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매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비용을 추계함
 - 현재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근거하여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(KICJ)는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가정함
- 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은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이 2025년 실시한 ‘전국범죄피해조사 2024’ 연구 수행 금액인 4억 6,000만원이 발생하고, 추계 기간 내 금액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 - 최근 시행한 ‘전국범죄피해조사 2024’는 2025년에 수행되었으므로, 2027년에는 ‘전국범죄피해조사 2026’이 수행될 예정이고, 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, 2030년에 발생
- 추계결과, 법무부장관이 매년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억 2,000만원으로 추계

[표 1]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실태조사 (안 제14조의2 신설)	-	460	-	460	-	9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현재 2년마다 시행 중인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매년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추계한 결과로, 실제 실태조사의 내용·범위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nabo.go.kr